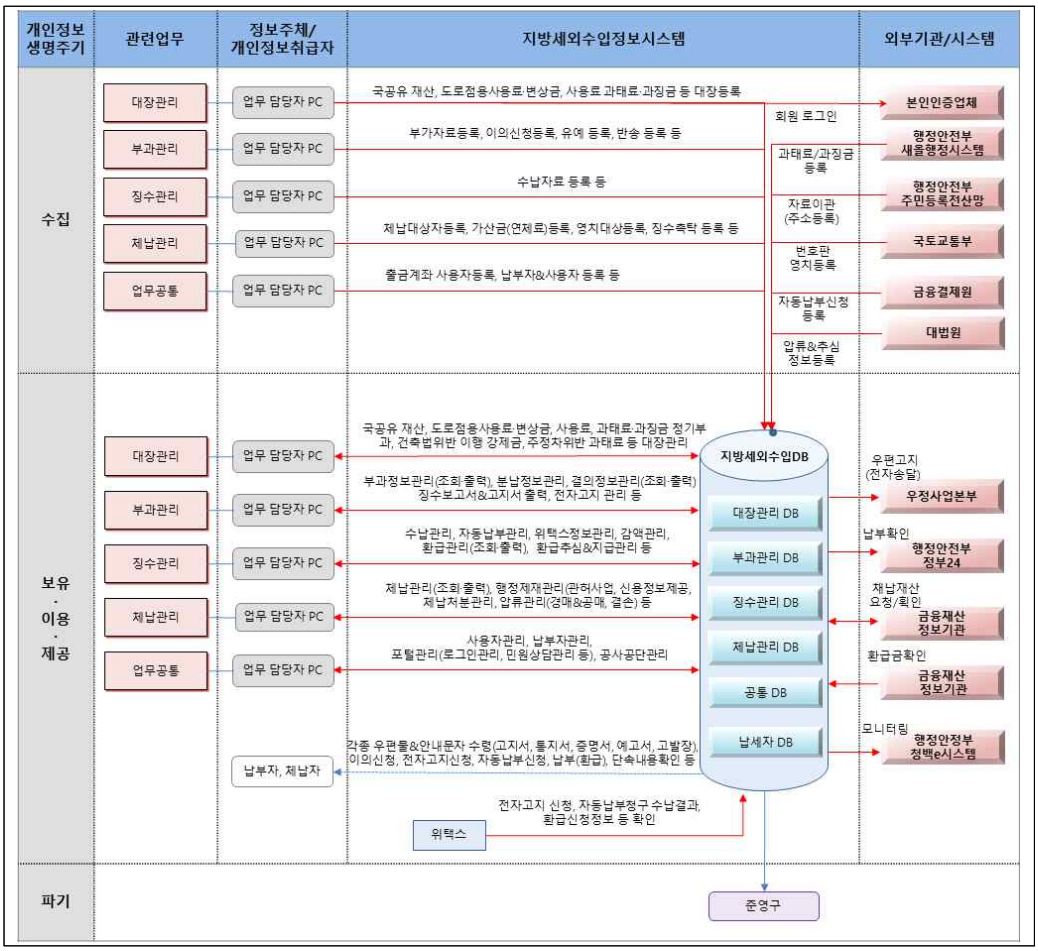
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6">수영구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㈜씨에이에스</td><td>평가
기간</td><td>2026.08.24
~
2026.09.29</td><td>평가
예산</td><td colspan="2">☐ 1천만원 미만
☐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
☐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
☐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
☑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</td><td>2026. 1. ~
2026. 12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 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부과·징수·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
• 세외수입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
•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2">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 처리</td><td rowspan="2">추진예산</td><td rowspan="2">102,650,562천원
(VAT 별도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2">행정안전부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2">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
제20조(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)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☐ 신규 구축
☐ 변경(고도화)
☑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 유형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
• 세외수입 관련 법·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
•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</td></tr>
<tr><td>운용체계 변경내용</td><td colspan="6">해당하지 않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개인정보파일개요</td><td>파일명</td><td>정보주체 수</td><td colspan="2">개인정보 항목</td><td>제3자 제공</td><td>개인정보 처리 목적</td></tr>
<tr><td>세외수입감액관리</td><td>10,746건</td><td colspan="2">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</td><td>국토교통부</td><td>부과한 세외수입에 대한 감액관리</td></tr>
<tr><td>세외수입결손관리</td><td>51,875건</td><td colspan="2">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</td><td>금융결제원, 여신금융협회, 건설공제조합, 대법원, PG사(VAN),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세청,</td><td>부과한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리</td></tr>
</table>

				관세청, 한국신용정보원	
	세외수입과오납관리	2,218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예금주정보(계좌번호, 예금주명)	금융결제원, 여신금융협회, 행정안전부	부과한 세외수입에 대한 과납 및 오납 처리
	세외수입부과관리	708,314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국토교통부, 우정사업본부	세외수입에 대한 부과 및 관리
	세외수입수납관리	658,620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금융결제원	부과한 세외수입에 대한 수납처리
	세외수입압류관리	246,423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	융결제원, 여신금융협회, 건설공제조합, 대법원, PG사(VAN),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세청, 관세청, 한국신용정보원	세외수입에 대한 압류 관리
	세외수입체납관리	356,289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	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관리

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	1. 개인정보 처리 흐름 -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 부과, 징수, 수납, 체납관리 등을 위해국토교통부, 국세청, 관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, 납세자정보, 체납자정보,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. -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과/징수/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-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이 '준영구'로 보유 목적이 달성되었거나, 보유기간이 경과되어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는 없음. 2.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

<table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영향평가기준</td><td>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</td><td>-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제2025-7호, 2025.9.5.,일부개정) 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분야), 제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
-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,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(‘22.3)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.
-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(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)</td></tr>
<tr><td>주요 평가기준</td><td>- 2026년 9월 11일에 시행된 “개인정보 보호법령”을 반영
-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된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”을 반영
-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2025년 10월 개정) 준용
-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</td></tr>
<tr><td>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</td><td colspan="2"><u>1.1.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</u>
-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
『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』 제20조(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
『자동차관리법』 제74조(과징금의 부과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</td></tr>
</table>

		『국유재산법』 제32조(사용료), 제72조(변상금의 징수)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』 제22조(사용료), 제81조(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,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**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** -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징수법,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(준영구)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
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	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	세외수입 고지서 출력 목적이 포함된 위탁계약서 작성 (3.4.2):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 목적이 포함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지체없이 접근권한을 해지 또는 중지 (4.1.9) : 개인정보취급자가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사용자 계정의 해지/중지가 필요한 경우(공문 수신 시)에는 지체 없이 공식적인 사용자 계정 관리절차에 따라 통제(해지/중지)되어야 함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할 경우 보호대책 적용 (4.8.3) :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에 출력자,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고 출력기록을 저장 및 보관하여야 함
	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	해당없음
평가결과		•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9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. •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. 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4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. 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4개 항목을 제외하고 21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2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. •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 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.